

인도관보

20082024-256481

CG-DL-E-20082024-256481

특별판

제II부 제3조 제(i)항

당국에 의해 출간됨

No. 460] 뉴델리, 수요일, 2024년 8월 14일/ 1946년 쉬라바나(SHRAVANA)월 23

환경·산림·기후변화부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공지

뉴델리, 2024년 8월 14일

G.S.R. 499 (E)— 「1986년 환경(보호)법(1986년 법률 제 29호)」 제 6조, 제 8조 및 제 25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생산자재활용책임(EPR) 규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공표할 것을 제안하는 다음과 같은 공지 초안은 「1986년 환경(보호) 규칙」 제 5조 제 (3)항의 요건에 따라 대중 및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이해당사자들의 정보를 위하여 공표되며, 상기 공지는 인도 관보에 게재된 본 공지의 사본이 대중에게 공개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이후에 중앙정부에서 고려할 것임을 여기에서 공지한다;

초안 공지에 포함된 제안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 개인은 명시된 기간 내에 서면으로 환경·산림·기후변화부 장관(Indira Paryavaran Bhawan, Jor Bagh Road, Aliganj, New 델리-110003)에게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mishra.vp@gov.in 또는 vinodsingh.77@gov 으로 전자메일을 발송할 수 있다.

초안 공지

급변하는 세상에서 오늘날 가장 우려되는 것은 오염과 자원의 부족이라고 할 것이다. 금속의 광석 및 광물은 재생불가능한 천연자원으로 전 세계 및 모든 부문에 걸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미 추출한 금속을 재사용 및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철금속의 재활용은 고용창출 가능성 외에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인도에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부족공동체가 거주하는 반면, 재활용은 금속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채굴 압력을 감소시키고, 생계의 손실과 산림 및 식물표면의 파괴를 방지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인도정부의 광산부는 비철금속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히 비철금속 부문에 대해 “2020 년 국가 비철금속 스크랩 재활용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였고, 공식적이고 잘 조직된 재활용 생태계를 촉진하고 금속 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 일자리 창출 및 GDP 기여 증대를 위한 특정 행동 조치를 권고하였다.

따라서 「1986 년 환경(보호) 규칙」 제 5 조 제 (3)항과 함께 해석되는 「1986 년 환경(보호)법(1986 년 법률 제 29 호)」 제 6 조, 제 8 조 및 제 25 조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중앙정부는 수시로 개정되는 「2016 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국가간 이동) 규칙」에 따라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생산자재활용책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한다, 즉:

1. (1) 본 규칙은 「2024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국가간 이동) 제2차 개정 규칙」으로 불릴 수 있다.
- (2) 본 규칙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016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국가간 이동) 규칙(이하 “해당 규칙”)」에서 제7장 뒤에 다음 장을 삽입하여야 한다: -

제8장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생산자재활용책임

44. 정의 – 본 장의 목적상, -

- (a) “대량 소비자”는 특정 회계연도의 어느 시점에 본 장의 부속서-I에 열거된 1천 톤 이상의 비철금속 제품을 사용하는 단체를 의미하며, 전자 소매업자를 포함한다;
- (b) “사업”은 금속스크랩의 재활용, 처분 및 처리를 위한 생산, 제조 또는 판매 및 수입 활동을 의미한다;
- (c) “수거지점”은 본 장의 목적을 위하여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공표한 표준운영절차 또는 지침에 따라 허가받은 수거대행업자가 비철금속 스크랩을 수거하는 시설을 말한다;
- (d) “수거대행업자”는 비철금속 스크랩을 수거하여 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e) “제조업자”는 생산자가 본 장의 부속서-I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이나 구성품 또는 예비부품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 「2013년 회사법(2013년 법률 제18호)」에 정의된 개인, 단체, 회사 또는 「1948년 공장법(1948년 법률 제63호)」에 정의된 공장 또는 「2006년 중소기업개발법(2006년 법률 제27호)」에 정의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 (f) 제품의 “단종일”은 사용자가 제품을 폐기하고자 의도하는 시점을 의미한다;
- (g) “환경적으로 건전한 스크랩 관리”는 수거, 운반, 처리 또는 폐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으로부터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속스크랩이 관리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 (h) “**생산자재활용책임**”은 비철금속제품 스크랩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된 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만 재활용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본 장에 따른 비철금속 스크랩 생산자의 책임을 말한다;
- (i) “**시설**”은 비철금속 스크랩의 수거, 접수, 보관, 재활용, 폐기 및 처리에 수반되는 공정이 수행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 (j) “**지침**”은 취급, 수거, 운반, 보관 및 재활용을 포함하여 비철금속 스크랩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발행한 문서를 말한다;
- (k) “**비철금속**”은 본 규칙의 목적상 알루미늄, 구리, 아연 또는 이들의 합금을 의미한다;
- (l) “**포털**”은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본 장의 준수를 관리하고 시행하기 위해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을 말한다;
- (m) “**제품**”은 비철금속을 함유하는 제품 또는 품목을 의미한다;
- (n) “**생산자**”는 딜러, 소매업자, 전자 소매업자와 같이 사용되는 판매기법을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 i. 비철금속 또는 그 합금을 사용하여 비철금속 및 그 구성품 또는 소모품, 부품 또는 예비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제조하고 판매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 ii. 비철금속 또는 그 합금을 사용하여 다른 제조업자 또는 공급자가 생산한 비철금속 및 그 구성품 또는 소모품, 부품 또는 예비부품으로 구성된 조립제품을 자체 브랜드로 판매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 iii. 비철금속 또는 그 합금을 사용한 비철금속 및 그 구성품 또는 소모품, 부품, 예비부품으로 구성된 수입품을 자체 브랜드 또는 오리지널 브랜드로 판매할 것을 제안하는 경우; 또는
 - iv. 중고 장치나 제품 또는 비철금속 스크랩을 수입하는 경우.
- (o) “**재활용**”은 비철금속 스크랩을 재활용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재활용 금속 및 합금을 생산하고,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명시한 표준운영절차(SOP)나 지침에 명시된 시설을 완비하는 모든 공정을 의미한다;
- (p) “**재활용업자**”는 비철금속 스크랩을 재활용하는 공정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q) “**재활용 목표**”는 부속서-III의 조항에 따라 재활용 대상인 비철금속 스크랩의 양을 말한다;
- (r) “**재생업자**”는 원래 의도된 수명보다 운전수명(working life)을 연장하고 원래 의도된 것과 동일한 용도로 부속서-III에 열거된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중고제품을 수리 또는 조립하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 (s) “표준운영절차”는 장비 및 공정의 최소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45. 등록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 포털에서 등록하여야 한다:-

- (a) 제조업자;
 - (b) 생산자;
 - (c) 수거 대행업자;
 - (d) 재생업자; 및
 - (e) 재활용업자.
- (2) 제 (1)항에 따라 특정 단체가 하나 이상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 해당 단체는 각각의 범주에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 (3) 제(1)항에 따른 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
- (4) 제 (1)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제 (1)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와 거래하여서는 안 된다.
- (5) 등록업체가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등록, 신고, 보고를 위한 정보 또는 본 장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또는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심리 후 최대 5년의 기간 동안 취소할 수 있으며, 또한 규칙 59에 따라 환경보상비를 부과할 수 있다.
- (6)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성, 재활용 또는 취급하는 금속스크랩의 용량을 기준으로 본 장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등록 수수료 및 연간 유지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46. 생산자재활용책임의 방식 및 목표 - (1) 모든 생산자는 부속서-I에 열거된 제품 또는 품목과 관련하여 부속서-II에 명시된 생산자재활용책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함에 있어 수거센터 또는 딜러와 같은 제3자 기관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 단,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는 전적으로 생산자에게 한정된다.
- (2) 운영손실이 있는 경우, 생산자의 생산자재활용책임 목표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정한 요인에 따라 감경되어야 한다.
 - (3) (i) 생산자는 등록된 재활용업자로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구매함으로써 생산자재활용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 (ii) 생산자 및 등록재활용업자가 제공한 세부사항은 포털에서 교차 확인되어야 한다;
- (iii)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의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 이행에 대해 더 낮은 수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 (iv) 인증서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 또는 이와 관련하여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기관의 환경감사 대상이다.

47.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 발급. - (1) 재활용 -** (i)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재활용업자를 위하여 포털을 통해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는 다음의 공식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

$$*Q_{EPR} = Q_p \times C_f.$$

* Q_{EPR} 은 이행증명서의 발급 가능 수량, Q_p 는 최종제품의 수량, C_f 는 각 최종제품의 전환계수 (1단위의 산출물 생산에 필요한 투입량)

- (ii) 각 최종제품에 대한 전환계수 C_f 는 재활용업자가 사용하는 기술을 근거로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 (2)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 당해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만료된 이행증명서는 본 규칙에 따라 조기에 소멸되지 않는 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 (3) 각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는 발급연도, 최종제품 코드, 재활용업자 코드 및 고유코드가 포함된 고유번호를 가지며,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는 100, 200, 500, 1000 및 10,000킬로그램 단위이거나 규칙 62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재활용 최종제품이 복수인 경우에는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의 발급 전환계수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2) **재생. -** (i) 부속서-III에 열거된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제품은 또한 재생이 허용되어야 하며, 재생업자는 포털에 등록되어야 하고, 재생인증서는 제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와 관련하여 규정된 형식으로 등록된 재생업자를 위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 (ii) 등록된 재생업자로부터 구매한 재생인증서 제출 시, 생산자의 생산자재활용책임은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제품의 해당 수량에 대해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만큼 유예되며, 재생제품의 연장된 수명이 만료되는 경우 생산자의 생산자재활용책임에 추가된다.

(iii) 재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재생된 제품의 연장된 수명이 만료되는 때에 유예된 수량의 75퍼센트만이 생산자의 생산자재활용책임에 가산된다.

48.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 거래.—(1) 생산자는 당해연도(연도 Y)의 생산자재활용책임에 전년도 잔존책임을 더한 수치에 당해연도 책임의 10%를 더한 수치를 한도로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구매할 수 있다.

- (2)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는 생산자가 매 분기마다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비례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이행하여야 한다.
- (3) 생산자가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구매하는 즉시, 해당 증명서가 생산자 책임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조정되며, 조정의 우선순위는 이전의 책임에 부여되고, 그와 같이 조정된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취소된다.
- (4) 생산자가 재생인증서를 구매하는 즉시 그 생산자재활용책임은 해당 제품의 수량에 대하여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자동적으로 유예된다.
- (5) 모든 생산자 또는 재활용업자에 대한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의 가용성, 요건 및 기타 세부사항은 포털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 (6) 본 장에 따른 모든 거래는 생산자, 재생업자 또는 재활용업자가 포털에서 기록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7) 중앙정부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얻어 발행한 지침에 따라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의 교환 또는 이전을 위한 하나 이상의 플랫폼을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8) 제 (7)항에 따라 수립된 플랫폼의 운영은 중앙오염관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중앙정부가 제정한 지침에 따라 운영 및 규제되어야 한다.
- (9)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 교환에 대해 제59조에 따른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 불이행에 대한 환경보상액의 각각 백 퍼센트와 삼십 퍼센트에 해당하는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책정하여야 한다.
- (10) 포털을 통한 등록업체 간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의 교환가격은 제(9)항에 언급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사이여야 한다.

49. 등록, 연간신고서 제출,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 및 자료의 추적을 위한 포털 -

- (1)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분기 및 연간 신고서,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의 등록 및 제출과 단체나 개인에 의해 발생한 비철금속 스크랩의 추적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해당 시스템은 회계연도에 발생한 비철금속 스크랩의 재료 균형과 생산자에 의해 시장에 도입된 비철금속 스크랩의 재이용이 반영되는 메커니즘을 보장하여야 한다.

- (2) 포털은 비철금속 스크랩에 대한 생산자재활용책임의 관리 및 이행을 위한 단일 포인트 데이터 저장소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온라인 포털은 「2024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국가간 이동) 제2차 개정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생산자재활용책임 시행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온라인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4) 발생한 비철금속 스크랩의 운반을 위한 매니페스트 시스템(manifest system)은 상기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본 장에 의한 단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 (5) 중앙정부는 공익을 위해 또는 본 규칙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명령을 통해 생산자, 수거대행업자, 재생업자 및 재활용업자가 해당 규칙에 따라 신고서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간을 9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50. 제조업자의 책임 - 모든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 (a) 포털에 등록한다;
- (b) 제품 및 그 구성품, 소모품, 부품 또는 스크랩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 스크랩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되거나 폐기되도록 한다;
- (c) 부속서-IV에 의해 신제품에 국내 재활용 재료의 최소 사용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제품에서 재활용 재료의 최소 사용에 대한 평가는 신제품의 총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 (d)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한다;
- (e)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다음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한다;
- (f) 복수의 사무소가 있는 제조업자의 경우, 모든 사무소의 정보를 통합한 단일 연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1. 생산자의 책임 - 비철금속 스크랩의 생산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 (a) 포털에 등록한다;
- (b) 부속서-II에 따른 생산자재활용책임 목표를 이행한다;
- (c) 주소, 이메일주소, 무료전화번호 또는 헬프라인번호와 같은 연락처 세부사항을 그 웹사이트나 광고 또는 문서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그 절차를 용이하게 한다;
- (d) 신고서와 관련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한다;

- (e)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다음 6월 30일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한다;
- (f) 미디어, 간행물, 광고, 포스터 또는 그 밖의 통신 수단을 통해 인지도를 형성한다;
- (g) 스크랩의 수거 및 운송을 위하여, 생산자 및 기타 단체는 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의 형성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편리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2. 수거 대행업자의 책임 – 수거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 (a) 포털에 등록한다;
- (b) 제조업자, 생산자, 대량소비자로부터 비철금속 스크랩을 수거하여 등록재활용업자에게 공급하고 포털에 정보를 업로드한다;
- (c)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한다;
- (d)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다음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한다.

53. 재생업자의 책임 – 모든 재생업자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 (a) 포털에 등록한다;
- (b) 제품 및 그 구성품, 소모품, 부품 또는 스크랩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철금속 스크랩 및 폐기물을 수거하여 재활용 또는 폐기한다;
- (c)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한다;
- (d)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다음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한다.

54. 재활용업자의 책임 – 재활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 (a) 포털에 등록한다;
- (b) 시설 및 재활용 공정이 본 규칙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 (c) 비철금속 스크랩이 등록된 제조업자, 생산자 및 수거대행업자로부터 조달되도록 보장한다;
- (d) 금속스크랩의 보관, 운반 및 재활용 과정에서 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 (e)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물이 승인된 처리보관폐기시설에서 처리되거나 상기 규칙에 따라 처리되도록 보장한다;
- (f)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한다;

- (g) 해당 신고서와 관련된 회계연도의 다음 6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포털에 규정된 양식으로 연간 신고서를 제출한다;
- (h) 재활용 및 폐기되지 않은 폐기물 또는 수량에 대한 정보를 산정하고 업로드한다.

55. 대량소비자의 책임 – 대량소비자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a) 수거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비철금속 스크랩을 수거하고 운송하는데 용이하도록 수거지점을 설정한다; 그리고
- (b) 자신이 발생시킨 비철금속 스크랩이 등록된 재활용업자, 생산자 또는 수거대행업자에게만 인계되도록 보장한다.

56. 중앙오염관리위원회의 책임. -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

- (a) 포털의 운영 및 유지관리, 그리고 생산자재활용책임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
- (b) 주 오염관리위원회와의 조정;
- (c) 본 장에 따른 비철금속의 포탈 등록,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 의무이행, 신고서 및 수거, 보관, 운송, 재활용 및 폐기 그리고 본 규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그 밖의 모든 문제에 관한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를 수시로 작성 및 발행;
- (d) 본 장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 또는 신고서를 포털에 작성하여 발행한다;
- (e) 생산자재활용책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세관이나 주 정부 또는 기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f) 문서화, 데이터 수집 및 포털에의 업로드;
- (g) 본 장의 위반에 대한 조치.
- (h) 주 오염관리위원회 및 주 정부의 도시지역기구 공무원을 포함한 역량강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 (i) 인식제고 프로그램의 시행;
- (j) 모든 이해관계자를 중앙집중화된 디지털 시스템에 통합;
- (k)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 정부에 제출; 그리고
- (l) 본 장에 따라 중앙정부가 수시로 위임하는 그 밖의 기능

57. 주정부, 연방직할지, 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오염관리위원회의 책임 – (1) 주 및 연방직할지의 산업부 또는 해당되는 경우 주정부 또는 연방직할지 관리청이 이와 관련하여 권한을 부여한 기타 정부기관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 (a) 기존 및 향후 산업단지, 부지 및 산업 클러스터에 금속스크랩 및 재활용단위의 수거를 위한 산업공간 또는 창고의 지정이나 할당을 보장한다;

- (b) 재활용 관련 근로자의 인정 및 등록을 보장한다;
- (c) 금속스크랩 재활용 종사자를 위한 산업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한다;
- (d) 금속스크랩 재활용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매년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장한다;
- (2) 시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금속스크랩의 수거를 위한 다수의 수거 지점을 설치하여 제조업자, 대량수요자 또는 수거대행업자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비철금속 스크랩이 시의 고체폐기물과 혼합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절히 분리 및 수거되어 재활용 관련 등록업체에 전달되도록 보장한다. 도시지역기구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세션을 실시한다;
- (3) 주 오염관리위원회 및 연방직할지의 오염관리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
 - (i) 중앙오염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본 장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한다;
 - (ii) 수거대행업자에 의한 수거지점의 설정을 촉진한다;
 - (iii) 중앙오염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생산자재활용책임 준수를 모니터링한다;
 - (iv) 생산자, 수거대행업자, 재생업자 또는 재활용업자에 대한 무작위 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 (v) 본 장에 따라 중앙정부의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58. 인도표준국(BIS)의 책임 – 인도표준국은 「2024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 (관리 및 국가간 이동) 제2차 개정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표준을 개정하고 본 장과 관련하여 필요한 표준을 공포하여야 한다.

59. 환경보상금 – (1)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본 장에 규정된 의무의 불이행,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의 허위 거래나 사용 또는 본 장 및 본 장에 따라 공포된 지침을 위반한 단체에 대한 환경보상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 (2) 재활용업자가 허위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발급하고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환경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 (3) 또한 본 장의 위반을 돕거나 방조한 미등록 생산자, 재활용업자에게도 환경보상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 (4) (i) 환경보상금의 지급은 생산자를 본 장에 명시된 생산자재활용책임에서 면제하지 아니하며, 특정 연도에 대한 미이행 생산자재활용책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이 후 최대 3년까지 이월되어야 한다;
 - (ii)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의 부족분이 1년 후에 해결되는 경우, 부과된 환경보상금의 85%퍼센트가 생산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 (iii)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의 부족분이 2년 후에 해결되는 경우, 부과된 환경보상금의 60%가 생산자에게 반환하고,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 부족분이 3년 후에 해결되는 경우에는 부과된 환경보상금의 30%가 생산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며, 그 후에는 어떠한 환경보상금도 생산자에게 반환되지 않는다.

- (5) 실제 허위정보로 재활용 비철금속 스크랩의 5%를 초과하여 재활용사업자가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등록취소 및 반환불가능한 환경보상금이 부과되는 결과가 초래되며, 이후 위법행위, 본 장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환경보상금 외에 등록을 영구적으로 취소한다.
- (6) (i) 환경보상금에 따라 징수된 자금은 중앙오염관리위원회에 의해 별도의 에스프로 계정에 보관되어야 하며, 징수된 자금은 환경보상금이 부과된 비철금속 스크랩의 수거와 재활용 또는 수거되거나 재활용되지 않은 경우 단종일 폐기나 단종일 이외의 폐기 또는 위원회가 결정하는 기타 항목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 (ii) 자금의 사용 방식과 항목은 운영위원회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60. 위반에 대한 조치 - 어떠한 자가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획득하기 위하여 본 장에 따라 요구되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 또는 위조된 생산자재활용책임 이행증명서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사용되도록 하는 경우, 본 장에 따른 지시를 고의적으로 위반하거나 검증 및 감사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1986년 환경(보호)법」 제15조, 제15A조, 제15B조, 제15F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본 장의 규칙 59에 따라 부과되는 환경보상금에 추가된다.

61. 검증 및 감사 - (1) 중앙오염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또는 지정된 기관을 통하여 제조업자, 생산자, 수거대행업자, 재생업자 및 재활용업자가 본 장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검사 및 정기 감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본 장 제59조에 따라 위반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검증 및 감사에 대한 수수료는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해당 등록업체로부터 부과한다.

62. 운영위원회 - (1) 본 장에 따른 생산자재활용책임의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중앙오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타 위원으로 구성된다:-

- (i) 환경·산림·기후변화부 대표 1인;
- (ii) 광산부의 대표 1인;
- (iii) 철강부 대표 1인;
- (iv) 제조업자/생산업자 협회의 대표 1인 또는 2인;
- (v) 재활용업자협회의 대표 1인 또는 2인;
- (vi) 자와할랄 네루 알루미늄 연구 개발 및 디자인 센터의 대표 1인;
- (vii) 운영위원회 의장이 공동으로 선임한 주 오염관리위원회 또는 오염관리원의 대표 1인;

- (viii) 중앙오염관리위원회 위원 비서관; 및
 (ix) 위원 소집관으로서 중앙오염관리위원회 국장.

- (2)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을 공동선임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본 장의 전반적인 이행, 모니터링 및 감독을 책임져야 한다.
 (4)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접수된 의견과 관련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결정하며, 본 장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관련된 모든 중요한 문제를 중앙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5) 운영위원회는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재활용목표를 검토 및 수정하고, 중앙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운영위원회는 본 장의 규정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3. 본 규칙의 다른 규정의 적용 - 본 규칙에 따른 유해 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본 장에 따른 비철금속 스크랩의 이용 및 관리에도 적용된다.

부속서 - I

비철금속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목록

S. 번호	제품
1.	음료, 에어로졸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용 캔
2.	식품, 제약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용 포장 호일
3.	문, 창문, 셔터
4.	알루미늄 복합 패널(ACP)
5.	알루미늄 칸막이, 그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6.	주방기구(조리도구, 통, 보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7.	문손잡이, 핸들,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가구 테이블, 의자, 벤치, 사다리 등
8.	지붕 및 천장 시트
9.	모터, 펌프, 교류발전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10.	도체 케이블 및 전선, 스트립
11.	위생 도기 및 피팅

12.	전기 피팅
13.	알루미늄 합금 자전거
14.	변압기
15.	발전기 세트
16.	중앙집중식 공조 설비
17.	의류 제품(예를 들어, 벨트 버클, 지퍼, 신발)
18.	완구

부속서-II

생산자의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

Sl. 번호	연도 (Y)	재활용 목표(중량 기준)
(i)	2025-2026	Y-X연도 비철금속제품 수량의 10%, 여기서 'X'는 제품의 평균수명이다.
(ii)	2026-2027	Y-X연도 비철금속제품 수량의 10%, 여기서 'X'는 제품의 평균수명이다.
(iii)	2027-2028	Y-X연도 비철금속제품 수량의 30%, 여기서 'X'는 제품의 평균수명이다.
(iv)	2028-2029	Y-X연도 비철금속제품 수량의 30%, 여기서 'X'는 제품의 평균수명이다.
(v)	2029-2030	Y-X연도 비철금속 제품 수량의 50%, 여기서 'X'는 제품의 평균 수명이다.
(vi)	2030-2031	Y-X연도 비철금속 제품 수량의 50%, 여기서 'X'는 제품의 평균 수명이다.
(vii)	2031-2032 이후	Y-X연도 비철금속 제품 수량의 75%, 여기서 'X'는 제품의 평균 수명이다.
(viii)	2025년 4월 1일 이후에 설립된 기관의 경우 2년 이후부터 생산자재활용책임 의무가 시작되며, 상기 목표에 따라야 한다.	
(ix)	(Y)년도 중고 장치나 제품 또는 비철금속 스크랩의 수입업자에 대한 생산자재활용책임은 (Y-1)년도에 수입된 비철금속의 100퍼센트로 한다.	

각주:

- (1) 재활용 목표는 2032년에서 2033년 말 이후에 검토 및 증가될 수 있다.
- (2) 알루미늄, 구리, 아연 또는 이들의 합금으로 제조된 제품의 평균수명은 중앙오염관리위원회가 지정하여야 한다.

부속서 - III

재생이 허용되는 비철금속제품의 목록

S. 번호	제품
1.	문, 창문, 셔터
2.	알루미늄 복합 패널(ACP)
3.	알루미늄 칸막이, 그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4.	문손잡이, 핸들, 하드웨어를 포함하여 가구 테이블, 의자, 벤치, 사다리 등
5.	모터, 펌프, 교류발전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6.	위생 도기 및 피팅
7.	전기 피팅
8.	알루미늄 합금 자전거
9.	변압기
10.	발전기 세트
11.	중앙집중식 공조 설비

부속서-IV

비철금속으로 제조된 신제품에서 재활용 재료의 최소 사용량

Sl. 번호	금속 유형	신제품의 총중량 중 재활용 재료의 최소 사용량(백분율 기준)			
		2027-28	2028-29	2029-30	2030-31
(i)	알루미늄	5	10	10	10
(ii)	구리	5	10	15	20
(iii)	아연	5	10	15	25

[F.번호 제12/84/2024-HSMD호]

나레쉬 팔 궁위(NARESH PAL GANGWAR), 차관보(Addl Secy.)

각주: 주요 규칙은 인도 관보, 특별판, 제 2 부 제 3 조 제 (i)항, 2016 년 4 월 4 일자 참조번호 제 G.S.R. 395(E)호에 공표되었으며, 이 후 2016 년 7 월 6 일자 제 G.S.R. 670(E)호, 2017 년 2 월 28 일자 제 G.S.R. 177(E)호, 2018 년 6 월 11 일자 제 G.S.R. 544(E)호, 2019 년 3 월 1 일자 제 G.S.R. 178(E)호, 2020 년 10 월 9 일자 제 G.S.R. 641(E)호, 2021 년 1 월 27 일자 제 G.S.R. 47(E)호, 2021 년 11 월 12 일자 제 G.S.R. 798(E)호, 2022 년 7 월 21 일자 제 G.S.R. 593(E)호, 2022 년 12 월 23 일자 제 G.S.R. 900(E)호, 2023 년 7 월 12 일자 제 G.S.R. 500(E)호, 2023 년 9 월 18 일자 제 G.S.R. 677(E)호 및 2024 년 3 월 12 일자 제 G.S.R. 177(E)호에 따라 개정되었다.

Ring Road, Mayapuri, 뉴델리-110064에 위치한 인도 정부 인쇄소에서 인쇄국에 의해 업로드되었으며,
델리-110054에 위치한 출판관리관에 의해 발행되었다.